

청주문화원 회원관리 규정

제정 : 2018. 0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청주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원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원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원의 규정)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된 회원으로 한다.

제4조(정회원)

①정회원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사업장 및 직장을 두고 있는 자, 청주시 출신자로서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②정회원은 본원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써 정관 제7조 절차에 따라 청주문화원으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정회원은 정관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제9조 의무를 가진다.

④원장은 정회원의 가입 이후 첫 이사회에 이를 보고, 승인 받아야 하며, 정회원이 정관 제9조 제3호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거주지를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원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준회원) ①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문화강좌 및 문화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등.

2.본원 문화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위촉된 자 등.

② 준회원은 원장 앞으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제한) 정회원이 전년도 연회비를 당 해 연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관 제8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원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 개최시기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한 본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총회 개최시기	1. 1 ~ 3. 31	4. 1 ~ 12 . 31
총회 의결권	전년도 연회비 납부회원	당해 연도 연회비 납부회원

다만 총회 의결권 가운데 임원선출의 권(선거권, 피선거권)은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 1년 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준회원은 본원의 문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에 참여와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원의 회원은 정관 제9조의 의무를 가진다.

1.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10조(회원의 회비 등)

1.회원의 연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연회비
정회원	12만원
특별회원	12만원
준회원	없음

다만 본원 정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문화원발전기금과 연회비 금액을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발전기금 + 연회비
원 장	200만원
부원장	50만원
이 사	30만원

2.연회비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3.신입회원은 회원가입 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가입 승인이 취소된다.

4.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납부하여 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경우 그에 준하는 회원의 자격을 원장이 따로 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회계 연도) 본원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의 회계처리는 정부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2조(회원의 상벌)

①회원으로써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으로써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3조(정회원과 특별회원의 혜택)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1.본원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각종 문화정보 제공
- 2.본원 소장 각종 자료 열람
- 3.본원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
- 4.회원을 위한 문화 향수 및 소양개발 프로그램 참여
- 5.회원은 문화원에서 정한 강좌 수강료 및 답사비 등 참가비할인
- 6.본원의 회원으로서 포상
- 7.기타 본원에서 주최하는 각종사업 및 행사 참여혜택 등

제14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정관 제10조에 의거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 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부 칙(2018. 02. 22.)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